

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

자료제공 / 국세청 납세홍보과

매년 1월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달이다.
 이번 호에서는 각 회사의 연말정산업무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해와 달라진
 세법 규정과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을 안내하고, 다음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와
 알아두면 유익한 사례 등을 제공하겠다.

- 편집자주 -

[표 1] 소득세율 인하

2001년			2002년		
과세표준금액	세율	누진공제	과세표준금액	세율	누진공제
1천만원 이하	10%		1천만원 이하	9%	
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	20%	100만원	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	18%	90만원
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	30%	500만원	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	27%	450만원
8천만원 초과	40%	1,300만원	8천만원 초과	36%	1,170만원

[표 2] 근로소득공제 확대

2001년		2002년	
총 급여액	근로소득공제금액	총 급여액	근로소득공제금액
500만원 이하	전액	5백만원 이하	전액
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	500만원 +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%	5백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	500만원 + 500만원 초과 금액의 45%
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	900만원 + 1,500만원 초과 금액의 10%	1,5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	950만원 + 1,500만원 초과 금액의 15%
4,500만원 초과	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 금액의 5%	3,0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	1,175만원 + 3,000만원 초과금액의 10%
		4,500만원 초과	1,325만원 + 4,500만원 초과금액의 5%

[표 3] 경로우대·장애인 공제 확대

2001년	2002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인·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- 대상자 : 장애인 및 65세 이상 부양가족 - 공제액 : 연 50만원 	<p>공제액 : 연 100만원</p>

[표 4]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 확대

2001년	2002년
<p>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명·상해보험 - 손해보험 - 농협·수협·신협·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	<p>「교원·군인·경찰·소방·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공제」도 공제대상에 포함</p>

[표 5]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

2001년	2002년
<p>공제대상 의료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찰,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-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용 -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	<p>시력 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 포함)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</p> <p>* 단, 안경·콘택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</p>

[표 6] 대학생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

2001년	2002년
<p>공제대상 교육기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(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, 신학대학 등 포함) 	<p>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일명 "사이버 대학"을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추가하여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 가능</p>

[표 7]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제도 신설

2001년	2002년
<p><신설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- 공제대상교육기관 :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비영리 법인(국외교육기관 포함) - 공제한도 : 1인당 연 150만원

[표 8] 연금보험료공제 확대

2001년	2002년
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(사용자부담금 제외) 및 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의 50%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	납부액의 100%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

[표 9]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 조정

2001년	2002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로소득세액 공제 -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⇒ 45% -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⇒ 22만5천원 +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% - 공제한도 ⇒ 60만원 - 근로소득에서 인정상여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제율 ⇒ "좌 동" - 공제한도 ⇒ 40만원 -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

[표 10] 기부금의 범위 조정

2001년	2002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- 시설비·교육비·연구비 ⇒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- 장학금 ⇒ 근로소득금액의 10%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시설비·교육비·연구비 외에 장학금에 대하여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· 근로소득금액의 10%한도내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

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

1. 연간급여액

1) 비과세 소득

-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(연 240만원 한도)
- 현물식대 또는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등

2. 총급여액

1) 근로소득 공제

- 연 500만원까지 : 전액공제
- 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 : 500만원 + 500만원 초과분의 45%
- 1,5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 : 950만원 + 1,500만원 초과분의 15%
- 3,0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 : 1,175만원 + 3,000만원 초과분의 10%
- 4,500만원 초과 : 1,325만원 + 4,500만원 초과분의 5%

2) 인적공제

- 기본공제 : 가족(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) 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
- 추가공제 : ① 장애자, 경로우대자(65세 이상)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
② 소득자가 부녀자로서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, 만 6세이하 자녀 양육의 경우는 1인당 연 50만원씩 공제
-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: 기본공제 대상자가 1인의 경우 연 100만원, 2인의 경우 연 50만원 공제

3) 연금보험료공제

-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본인 부담 보험료 · 기여금 · 부담금의 100% 공제

4) 특별공제

- 보험료 : ①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는 전액공제 ② 자동차보험, 화재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은 연 70만원 한도 ③ 장애인전용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(일반 보장성 보험과 중복 공제할 수 없음)
- 교육비 :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· 동거입양자 및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입학금, 수업료, 보육비용, 기타 공납금으로서

- ① 유치원 · 보육시설 : 1인당 100만원 한도(다만, 영유아보육비 · 유치원비,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자녀양육비와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) ② 초 · 중 · 고 : 1인당 150만원 한도 ③ 대학(사이버대학 포함) : 1인당 연 300만원(근로자 본인은 전액 공제) ④ 대학원 : 본인에 한하여 전액공제 ⑤ 장애인특수교육비 : 1인당 150만원

- 의료비 : 총급여액의 3%초과분을 공제하되 연 300만원 한도(다만, 노인 의료비 · 장애인 재활치료비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)

- 주택자금 : ① 주택저축불입액(또는 상환액)의 40% ② 주택취득 ·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%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

- (①, ②, ③을 합하여 300만원 한도)

- 기부금 : ① 이재민구호금품 및 불우이웃기부금 등(법정기부금) : 전액공제 ② 사회 · 복지 · 문화 · 종교단체 기부금 등(지정기부금) : 소득금액의 10%범위 내

※ 표준공제

· 보험료공제, 의료비공제, 교육비공제, 주택자금공제 및 기부금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공제금액이 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연 60만원을 표준공제로서 공제함

5) 기타의 소득공제(조세특례제한법)

· 연금저축소득공제 : 연간 저축불입액(240만원 한도)

☞ 2000.12.31이전 개인연금저축가입자 : 연간저축불입액의 40%(72만원 한도)

·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: 투자금액의 15%(종합소득금액의 50% 한도)

·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: 총급여액의 10%를 초과한 금액의 20%(공제한도 : 총급여액의 20%와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)

3. 과세표준

1) 기본세율(9~36%)

① 1,000만원 이하 : 9%

② 1,000만원 초과 4,000만원 이하 : 18%(-90만원)

③ 4,000만원 초과 8,000만원 이하 : 27%(-450만원)

④ 8,000만원 초과 : 36%(-1,170만원)

4. 산출세액

1) 세액공제, 세액감면

· 근로소득세액공제

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: 45%

②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: 22만5천원 + 50만원 초과 금액의 30%(공제한도 40만원)

· 장기증권저축세액 공제

당해연도 저축불입금액의 5%, 전년도 저축불입금액의 7%

5. 결정세액

1) 기납부 세액

6.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

본문 내용 참조. ☐